

#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계획

## 1. 목적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제1항 제9호(학칙 개정 절차)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만들고자함

## 2.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

교사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에 따라 각 대표자에 의해 개정안을 협의

절차	참고
개정안 발의	-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학생회, 교직원회,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
↓	
학교공동체 의견 수렴	-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,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 (학생, 학부모, 교직원)의 의견 수렴
↓	
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	-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
↓	
학교운영위원회 심의	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)
↓	
공포 및 보고	-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,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-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<b>[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]</b>

## 3. 방침

학생자치회 대의원회, 학부모회, 교직원회, 설문지, 학급밴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, 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.

#### 4. 세부 일정

연번	월일	내용	추진주체	비고
1	2020.7.20.	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, 일정, 활동내용 홈페이지 공고	학생안전인권부	학교홈페이지 학교 생활규정에 공고
2	2020.7.6.~7.20.	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(교사, 학생, 학부모)	규정개정심의위원회	공고, 가정통신문
3	2020.7.6.~7.21.	학급자치회 의견수렴	학생자치부	학급별 의견 수렴
	2020.7.20.~7.23.	학생대의원회 의견 수렴	학생자치부	학생자치회 의견 수렴
		교직원 의견 수렴	학생안전인권부	교직원 의견 수렴
		학부모 의견 수렴	학부모회	학부모 의견 수렴
4	2020.7.24.	인권규정 의견 초안 작성	규정개정심의위원회	
5	2020.7.27.	인권규정 개정안 협의	규정개정심의위원회	
6	2020.8.11.	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	규정 개정 심 의 위 원 회, 행정실	학교운영위원회 심의
7	2020.8월 중	개정된 인권규정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	학생안전인권부	
8	2020.9월 중	홍보 및 교육	학생안전인권부	

#### 5. 기대효과

- 가. 교육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문화 조성
- 나.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, 다양성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
- 다.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규정 마련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구현